

법률 제6,109호

공포일 : 2000. 1. 12

제조물 책임법

기술교육처장 정연해

1. 제조물 책임(PL)제도의 개념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 책임법이 기업들의 경영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할 것 같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들여 쌓아왔던 기업이미지가 제조물 책임법 시행으로 자칫 소송등에 휘말릴 경우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손해배상과 맞물렸을 때 기업의경제적 손실 규모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서 일부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제조물 책임법 시행에 따른 심각성이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등으로 그 대비책 마련에 소홀한 측면이 있고, 또한 대응능력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의 제조물 책임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제조물 책임(PL : Product Liability)란 어떤것인가?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그

제조물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들에게 결함 제조물로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법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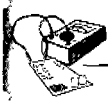
좀더 광의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제조물 책임이라 하는 것은 제조물의 사용자나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침해를 가한 결함이 있는 제조물의 제조자와 판매자들이 그 사용자 및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칭하는 의미라 보면 된다.

2. 제조물 책임법 입법 배경

과학기술 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현대 사회는 대량 생산과 복잡한 유통 과정, 다량의 소비 사회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사회 변화는 소비자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함과 더불어 불량 또는 유해 상품, 결함있는 상품이나 불량식품 등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러한 결함상품들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본법이 시행되기 이전



에는 소비자나 사용자가 결함제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책임제도에 의하여 결함제품의 제조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추궁해 왔는데, 이는 첫째 불법 행위의 책임을 추궁할 때 소비자 자신이 제품의 결함을 규명하고 그 규명한 결함과 자신의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규명되어야만 되고, 둘째 계약책임을 추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그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가 없었다.

결국 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소비자는 제품 결함에 대한 원인 규명을 정확하게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했으며 제조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도 매우 힘들어졌다.

이러한 어려움등 때문에 결함제품에 대하여 제조자가 직접결함을 규명하고 직접적 결함과 관계없이 결함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하는 제조물 책임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따라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법의 제정 시행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소비자 권익의 시대로 들어섰음을 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결함 제품의 수거, 폐기 등 리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법과 함께 개방 경제 체제하에서 소비자 와 기업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본법을 도입했거나 하고자하는 추세이다.

오늘날 국제화·개방화 시대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 기업에 엄격한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인데 이러한 추세에 시급히 적응하여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수출제품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제조물 책임법과 시해에 따른 영향

● 긍정적 영향

- 소비자 권의 증대

본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현행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제도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대에 기여하는바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이로 인한 분쟁해결도 보다 체계적이고 용이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본법이 시행됨으로써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제조물의 설계·생산·표시·검사 및 설치등 제조물의 제조에 관한 전과정에 대하여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기 때문에 제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 기업의 경쟁력 강화

세계적 추세인 시장의 국제화·개방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각 제조자의 제품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이익 증대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본법의 제도 도입이 추진되는 추세이고 보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제조물의 안전에 만반의 준비를 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 부정적인 측면

- 소송증가에 따른 기업 경영 악화 초래

본법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주권 의식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결함제품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과 시간·비용등 기업경영의 자원 낭비로 인한 경영 악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 신제품 개발 의욕 저하 및 지연가능성 증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자의 책임이 매

우 엄격하게 규정되어짐으로써 제품의 안전성 평가 및 설계기준 등이 강화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다면 신제품 개발 출시 시기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 의욕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 기업 이미지 저하

제조물 책임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한 손배배상의 책임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원할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해 주는 기업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시각과 인식을 줄 수 있어 기업이미지 저하로 인한 영업 및 제품의 판매 촉진 활동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

- 제품가격의 상승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에서는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 및 시험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원가 상승 요인의 가능성이 있어 결국 제품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4.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은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을 말하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리전기부분에서는 전기재료·기자재·작업공구·장비·계측기와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기설비, 축, 수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 사용설비, 조명설비 및 승강기설비는 물론 보일러·정보통신·소방·운송 설비등도 포함된다.

또한 우리나라 민법 제98조에서는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물건으로 규정함으로 민법의 해석상 전기나 열등의 무형에너지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분류함에 따라 제조·가공된 동산에 포함되므로 우리나라와 미국(일부주제외), 유럽등에서 전기를 제조물 책임법의 대상

에 포함시키고 있다.

전기가 제조물인가에 관해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제조물 책임법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전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하강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5. 제조물책임법 해설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피해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선언하고 나아가 이러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제조물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의 제고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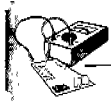
제2조 (정의) - 제2조 제1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제조물"이라 함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다.

(가)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자연력

유체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간의 일부를 점유하는 유형적 존재로서 일반적으로 분자가 존재하는 물질로서 규정한다.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전기, 음향, 광선, 열 등은 무체물이지만 관리가 가능하다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나 서적등과 같은 지적 산물 혹은 서비스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동산

동산이라 함은 민법 제98조에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토지 및 정착물 등의 부동산은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조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인도되는 시점에서 동산이고 관련 결함과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될 경우에는 해당 동산의 제조자 등은 제조물책임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다)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제조라 함은 제조물의 설계·가공·검사·표시를 포함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원재료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즉 1차 산업이나 3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생산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가공이라 함은 재료에 물리적 힘을 가하여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컨대 식품의 조미·냉동·건조 등이 가공에 해당되며, 제조나 가공이 가해지지 않은 천연적인 미가공 농산물·축산물·임산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2조 (정의)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다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결함’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조물에 있어 안전성이 결여되어 제조물의 통상 예견된 사용에 있어서 생명·신체 혹은 재산상의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제조물의 결함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천태만상의 제조물에 대하여 객관화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제조물의 결함 여부의 판단은 “안전성 결여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그 제조물의 평균적 소비를 표준으로 하고 소비자의 기대수준과 정도,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 경고의 방법, 위험성의 강도와 개연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되어 질 것으로 보며, 결함의 종류별 의미는 아래와 같다.

(가) 설계상의 결함

제조물의 외형적인 형태, 품질 및 구조에 관한 일체의 결함은 제조물의 안전성과 효율성, 신뢰성 및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제조자의 계획 또는 의식적 선택의 결과로 발생한다. 즉 설계대로 제조물이 제조되었지만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않아 발생된 결함을 의미한다.

(나) 제조상의 결함

제조과정에서 부주의로 제조물이 제조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결함은 제조물의 제조나 관리단계에서의 인적·기술적 부주의에 주로 기인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거나 어떠한 부품이 누락된 채로 출하되어 사용시 문제가 발생하는 결함 등을 들 수 있다.

(다) 표시상의 결함

제조물의 제조자는 그 제조물의 사용방법을

지시하고, 그 제조물의 사용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해야한다. 이러한 표시 및 경고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경우 이를 표시상의 결함이라 한다. 결국 설계상의 결함이나 제조상의 결함이 제조물 자체의 결함이라 할수 있는 반면에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물 자체에 존재하지 않는 결함이라고 할수 있다. 예를 들어 취급설명서나 경고사항 등의 부적절성이나 미비등 표시불량에 의한 결함 등을 말한다.

(라) 기타 유형의 결함

결함의 종류로서 크게 위의 3가지를 들수 있으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이외에도 존재할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타 통상적으로 개대할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자의 제조물 출고시점에서는 결함이 없었으나 유통과정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비자에 인도시 제품의 결함이 존재하게 되는 유통과정 상의 결함 등을 들수 있다.

제2조 (정의)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수 있는 표시를 한 자

(가)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業으로 하는"이라 함은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어느 일정기간 동안 계속할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면 최초의 행위도 업으로 한 것으로서 간주한다.

본 조에서는 완제품의 제조자와 원재료·부품의 제조자는 물론 제조물을 수입한 자 모두를 제조업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일지라도 동종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일 경우에는 "업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나) 표시업자 혹은 오인 표시업자

제조물의 이름·상호·상표 또는 기타 식별 가능한 상태의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자로 표시하거나 또는 오인시킬수 있는 표시를 한자 모두가 책임의 주체로서 간주한다.

(다) 판매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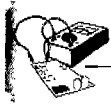
본 조에서는 판매업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3조 제2항에서 제조업자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판매업자는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결함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주체라고 할수 없다. 따라서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업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법에서는 보충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판매업자에게 보충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 제조물 결함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의 형평의 원칙을 두되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수 없거나 확정할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당 제조물의 판매업자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제조물책임)

제3조(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



에 손해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조는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의 특칙으로서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즉, 제조물책임 원칙을 "과실"에서 "결함"으로 변경하였지만 그 본질은 아직도 불법행위 책임인 것이다. 그러나 과실책임이 주관적 책임인 반면에 결함 책임은 객관적 책임으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까지 입증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제조물 책임은 결함제품으로 인하여 당해 제품 이외의 사람의 신체나 다른 재산에 대한 피해, 즉 확대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법은 당해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가 그 제품 자체만에 그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때에는 하자 담보책임이나 채무 불이행 책임에 의한 구제에 의한다. 그러나 본 법의 적용대상인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함제품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본 법을 적용한다.

(가) 결함과 피해사이의 인과관계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묻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당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입증하는 결함과 피해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나) 입증책임

제조물 책임에서는 입증책임문제는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과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므로, 아무리 피해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을 경우 제조물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재판실무에서는 제조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물의 종류, 결함의 유형, 제조 후 사고발생 시까지의 기간, 제조물의 사용상황, 증거의 편재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개 사안별로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존재, 결함의 존재 시기 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정에 있어서는 경험이나 사실상의 추정 등이 사안에 따라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의 입증부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

결함 제조물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는 어느 범위까지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가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미국에서는 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는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관례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관련 규정 (민법 제393조)을 유추 적용한다는 견해를 채용하고 있다. 민법 제 393조 규정의 기본 견해는 개개 사안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통상 발생한 손해)인가 특별 손해(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인가를 검토하여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시에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 예견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본 법에서는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조물 책임제도는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의 발생에 의하여 소비자는 신체·

생명·재산상의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당해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가 제품 그 자체에만 그치는 경우와 품질상의 하자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한 클레임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구제에 맡기고 제조물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다만 일단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확대손해는 결함책임에 의하고 결함제품 자체의 손해는 계약책임에 의해 처리한다면 입증해야 하는 책임요건이 각각 다르게 되어 혼동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제4조 (제조업자 면책사유)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은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본 조는 제조업자가 일정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며, 다만 본 조에 의한 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이며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배상책임까지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취급하지 아니한 사실 입증

제조업자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조물의 드난 이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이 영리 목적으로 유통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 사유로서 성립될 수 있다.

(나)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의 결함 존재 발견 불가능 사실 입증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인도시킨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다. 여기에서 과학·기술수준은 결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이며 객관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총체적인 지식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어느 특정 개인이 가진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의 총체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당해 결함 유무의 판단에 필요하게 되는 입수 가능한 최고수준의 지식에 비추어 결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제조업자에게 개발위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시킨다면 연구 및 기술개발이 저해되거나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해 결함이 개발위험에 해당된다는 것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다) 강제법규 준수 의무에서 발생한 결함의 사실 입증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상의 강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이 강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조물의 제조가 위법임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다. 정부가 정하는 법적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그것은 제조물의 제



조·판매를 위한 최저 요건이며, 이로 인하여 제조물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 되며 법적 기준에 따라 제조 또는 가공되어 그로 인해 결함 제조물로 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면책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등 규정에 의하여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기준의 재정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원재료·부품 제조업자의 사실 입증

본 면책사유는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도 자기가 제조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나, 제조물이 조립된 완성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거나 완성품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써 그에 대한 사실만을 입증하면 된다.

(마) 사후 개선조치등을 소홀히 한 경우의 면책 박탈

위의 사유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면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이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제품을 공급한 이후에도 제조물을 감시하여야 하며 만약에 결함이 존재한다면 리콜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거나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제5조 (연대책임)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조물의 결함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의 비율과 관계없이 각 자가 손해 전체에 대해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연대책임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불법 행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각각의 책임 주체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 결함 제조물에 의한 사고가 복수의 책임 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 그 책임 주체간에는 손해에 대한 각자 어느 정도의 기여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되겠지만 복수의 책임 주체 중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먼저 이행한 자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책임주체에게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한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 조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특약(개별약정이나 약관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특약을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자기의 직접거래 상대방인 사업자에게 미칠 뿐이며 제조물을 인도한 모든 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면책특약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전에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뜻의 기재가 제품의 표시나 취급설명서 등에 있고, 그 효력이 거래하는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인적 손해에 관한 면책특약에 대해서는 본 법에서 특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도 해석된다.

제7조 (소멸시효 등)

제7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본 조는 권리관계를 무한정 불확정의 상태로 두는 것은 피해자와 제조업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 한 것으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당해 결함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 (손해를 안 때가 아님)로부터 기산하여 10년 이내로 하고 있다.

제8조 (민법의 적용)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본 법은 민법의 과실책임 불법행위책임제도에 더하여 새롭게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제도인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도의 특칙이 되는 것이고 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의한 보충적인 적용이 예상되는 것으로서 과실상계규정이 있는데, 과실상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의 명문화된 규정 (민법 제763조, 396조 준용)이 있다. 과실상계는 가해자측에 전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사정이 피해자측에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이며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고려되는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책임에 있어서 책임요건으로서의 과실과 같은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로의 피해자측 부주의로 해석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방해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게 될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항, 제2항

-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로부터 적용한다.

(가) 시행일

제조업자 혹은 판매업자의 준비와 소비자 등의 인지등을 하여 법률 공포 후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적용예

이 법 시행 이후 인도되는 최초의 제조물부터 결함에 의한 손해 발생시 본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끝>

인간을 성장시키는 모체는 정직이다.

-워싱턴(미국의 정치가·초대 대통령, 1732~99)-